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21298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redacted]휴사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7.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5,256,660원, 지방교육세 2,525,660원, 농어촌특별세 1,262,83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취득세등 감면

1) 원고는 종교단체로서 2015. 12. 16.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순번에 따라 '제1토지', '제2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12. 16.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아울러 제1토지의 과세표준을 2,376,027,403원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통칭하여 '취득세등'이라 한다)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을 근거로 취득세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받았고, 제2토지의 과세표준을 631,416,597원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를 근거로 취득세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이를 감면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신탁

원고는 2015. 12. 24. A과 사이에, 위탁자를 원고, 수탁자를 A, 수익자를 주식회사 [redacte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A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신탁계약]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처분 및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2조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위탁자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 위반시

제16조 (처분대금 등 정산)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과 신탁보수
2. 제3호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
3. 신탁계약 체결 전 설정된 저당권자 등의 채무
4. 수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5. 수탁자가 발행한 채권증서상의 우선수익자의 채권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지급

※ 계약의 내용

1. 신탁기간: 2015. 12. 24.~2035. 12. 23.

4. 채권증서금액: 우선수익자(소외 회사), 수익권증서금액(300억 원)

※ 특약사항

제2조 (여신거래 및 원금의 정의)

① 이 신탁계약서에서 '여신거래계약'이라 함은 우선수익자가 행하는 여신거래 일체에 관하여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이 신탁계약서에서 '원금'이라 함은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우선수익자와 채무자간의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지급보증, 매출채권 거래,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유가증권매입, 유가증권대여, 사채발행관련 채무, 기타 여신거래에서 발생되는 모든 채무 등을 말한다.

다. 원고의 취득세등 신고·납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탁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A 앞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으로 이전됨으로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었던 취득세등을 추징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6. 1. 25. 피고에게 제1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등 합계 109,297,240원(취득세 95,041,090원, 지방교육세 9,504,100원, 농어촌특별세 4,752,050원), 제2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등 합계 29,045,150원(취득세 25,256,660원, 지방교육세 2,525,660원, 농어촌특별세 1,262,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차 경정청구 및 피고의 1차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2016.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고,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의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등의 감면경정 및 납부세액 환급을 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취득세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차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1차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한편 원고는 1차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아래 바.항의 선행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는데, 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등의 추징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고, 이 사건 신탁은 매각 ·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2토지에 관한 취득세등의 감면 및 납부세액 환급을 다시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2) 이에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제2토지는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 소정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 원고가 제2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착공도 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선행 소송 및 이 사건 소송의 제기

원고는 2016. 8. 4. 1차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027호,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아울러 2017. 4. 26.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양 소송이 모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1)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거부처분사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당초 내세웠던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사유도 그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과세관청에 이와 중복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고 거부처분을 받아 그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부분에 관한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의 취지[1]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당초 제2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종교시설 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1차 경정거부처분이 있자, 그 취소를 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제2토지가 구 지방세특

1) 위 판결은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원심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소정의 노인복지시설 부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선행 소송과 이 사건 소에서 모두 제2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소정의 노인복지시설 부지로서 추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행 소송 및 이 사건 소에서 모두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쟁점, 즉 「제2토지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소정의 노인복지시설 부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같은 법 제178조 제1호 소정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선행 소송과 이 사건 소의 2개의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위법사유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한 세액을 다투는 1차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선행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의 하나로서 판단되면 족하고, 선행 소송의 제기 이후 전체 세액 중 제2토지에 관한 세액에 관하여서만 추가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별도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판사 이혜랑

판사 박상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별지 1.

목 록

1. 제1토지

가. [redacted]군 B 임 9,251㎡ 중 6,183㎡

나. [redacted]군 C 임 8,528㎡

다. [redacted]군 D 임 6,995㎡

라. [redacted]군 E 임 5,612㎡

마. [redacted]군 F 임 3,603㎡

바. [redacted]군 G 임 1,870㎡ 중 1,591.0247㎡

([redacted]군 G 임 1,870㎡의 지분 38020분의 32348)

사. [redacted]군 H 임 3,471㎡

아. [redacted]군 I 임 1,762㎡

2. 제2토지

가. [redacted]군 B 임 9,251㎡ 중 3,338㎡

나. [redacted]군 J 임 12,699㎡ 중 3,214㎡

([redacted]군 J 임 12,699㎡의 지분 12,699분의 3,214)

다. [redacted]군 K 임 5,735㎡ 중 1,363㎡

([redacted]군 K 임 5,735㎡의 지분 5735분의 1363)

라. [redacted]군 L 임 4,421㎡

마. [redacted]군 M 임 6,474㎡

바. [redacted]군 N 임 215㎡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03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끝.